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부동산을 압류등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압류통예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시송달 대상자: 김*재외 114명
2. 공고기간: 2020. 5. 26. ~ 2020. 6.9 (14일간)
3. 공고방법: 우리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사항

상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대상자는 위의 법적근거에 의해 부동산 처분 시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주차세입팀(☎ 02-2670-39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